

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상 호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
신청내용	제품 · 용기 종류	재생원료 종류 및 사용량(kg)
	재생원료 사용 표시 비율(%)	국내외 인증서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출 기초자료 2. 재생원료 거래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재생원료 관리대장 4.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서 및 부속서류(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